

안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578
------------	-----

발의년월일 : 1996 . 11 . 25.
발 의 자 : 박종원의원외32인

1. 제정이유

-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복지회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 복지회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음.(안제5조)
- 복지회관을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및 노인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함. (안 제6조)
-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또는 이용 및 이용제한을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 복지회관에 대한 수당 및 운영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음. (안 제15조)

3. 예산소요

※ 내역별첨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소요액

○ 총 계	_____	243,542,000원
○ 관리비(12개월)	_____	1,200,000원
○ 복지사업 장비구입	_____	70,542,000원
○ 주간노인 보호실	:	2,200,000원
○ 물리치료 운영비품	:	34,500,000원
○ 이·미용실 운영비품	:	7,100,000원
○ 교육실 운영비품	:	8,897,000원
○ 상담실 운영비품	:	2,845,000원
○ 차량구입(주간보호실 운영)	:	15,000,000원
○ 행정장비 구입	_____	7,000,000원
○ 운 영 비		
○ 인건비 : 700,000원 × 12명 × 17월	=	142,800,000원
(상여금, 정근수당 포함)		
○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5,000원 × 5명 × 280일	=	7,000,000원
○ 프로그램 운영비(주간보호실, 차량, 급식, 기타사업) : 15,000,000원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복지회관의 명칭은 안산시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복지회관은 안산시 성포동 589번지 성어공원내에 둔다.

제4조 (업무)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2. 노인학교 설치운영
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4. 휴식 및 위락시설 유지관리
5. 노인건강상담
6. 주간보호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
7. 독서실 운영
8. 이·미용실 설치 운영
9.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실
2. 대, 소회의실
3. 취미교육실
4. 주간 노인보호실 (보호실, 기능회복실, 물리치료실)
5. 이·미용실
6. 독서실
7.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은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의 정지등)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4. 복지회관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복지회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업무감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자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 ①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은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노인이 아닌 자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회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 (임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수당 및 운영비)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93. 5.27. 조례 제490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 표]

사 용 요 금 표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회의실	1일 / 1회 (2시간 기준)	20,000원	1시간 초과마다 5,000원씩 추가

안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578
번 호	

발의년월일 : 1996 . 11 . 26.
 발 의 자 :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의원외 9인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노인복지관의 설치및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하는 조례로써
- '96년12월24일 관내 노인들과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조문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보완함.

2. 수정주요골자

- 제4조중 "주간보호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재가 노인복지사업"으로 수정하고,
- 제5조중 "상담실, 공동작업장, 식당 및조리실, 오락실"을 신설하며,
- 제9조에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제10조중 "65세이상의 시민"을 "노인"으로 수정하며,
- 부칙중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 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기간 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효력을 가질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함.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업무) 제6호중 "주간보호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을 "재가 노인복지사업"으로 한다.

제5조(시설)중 제7호~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7호를 제11호로 한다.

7. 상담실
8. 공동작업장
9. 식당 및 조리실
10. 오락실

제8조(위탁의 정지등)중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업무감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 제1항중 "65세이상의 시민"을 "노인"으로 한다.

제12조(임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를 제14조(사용료)로 하고 제14조(사용허가)를 제13조(사용허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운영비)를 제15조(운영비 보조)로 하고,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으로 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노인복지관설치및관리 운영조례 ('93.5.27. 조례 제490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 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업무) (생략) 1.~5. (생략) <u>6. 주간보호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u> 7.~9. (생략)	제4조(업무)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u>6. 재가노인복지사업</u> 7.~9.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6. (생략) <u><신 설></u>	제5조(시설) 1.~6 (현행과 같음) <u>7. 상담실</u> <u>8. 공동작업장</u> <u>9. 식당 및 조리실</u> <u>10. 오락실</u> <u>11. (현행과 같음)</u>
제8조(위탁의 정지등) (생략) 1.~4. (생략) 5. 복지회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탁의 정지등)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u><삭 재></u>
제9조(업무감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자에 대하여 업무 감사를 할 수 있다. <u><신 설></u>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이용) ①안산시내에 거주하는 <u>65세 이상의 시민은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u></p> <p>②(생 략)</p> <p>제12조(임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p>	<p>제10조(이용)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u>노인은 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u></p> <p>②(현행과 같음)</p> <p>제12조(임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p>
<p>제13조(사용료) 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4조 (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p>	<p>제14조(사용료) 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삭 제〉</p>

원 안	수 정 안
<p><u>제15조(수당및 운영비)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 조례 ('93. 5.27 조례 제 490호)는 이를 폐지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5조(운영비보조).....</u></p> <p>.....<u>복지회관의 관리운영.....</u></p> <p>.....</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93. 5.27 조례 제490호)는 이를 폐지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u></p>